

# 1 지출예산 과목내역 (목·세목)

※ 아래 표 노란색 음영부분 이외의 내역에서 지출한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불인정 될 수 있음.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101	인건비	※ 기관의 성격 또는 기관 내부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보수' 등의 세목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가 필요한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세세목'을 신설하여 사용 및 관리	공통
	01 보수	1. 보수규정에 의한 직급별 평균 임금산정, 결원율을 참고하여 계상 2.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기본연봉액을 총액으로 계상 3. 보수규정 등에 의한 상여수당 등 제수당 가.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 중 제수당에 해당되는 경비 포함	공통
	02 기타직보수	1.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근로자의 보수, 상여금, 법정수당	공통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공통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 정원외의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공통
107	퇴직급여	1. 퇴직급여 지급액 2. 근로자 퇴직급여 총당금 전입액 3. 근로자 퇴직보험료 4.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5.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공통
	<b>201 일반운영비</b>	1. 일반운영비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만을 편성 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본적 지출항목은 편성할 수 없음 2. 자산을 형성하는 자본적 지출 항목은 자본적 지출 해당과목에 계상	공통
	<b>01 사무관리비</b>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수선비, <b>일반수수료</b> 나. 필기구, 용지대등 사무용 잡품비 <b>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b> <b>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 제작비</b>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판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b>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b>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p>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비목에 계상</p> <p>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p> <p>야.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p> <p>자. 차관물자용역대</p> <p>1)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p> <p>2)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등 용역대 및 해외훈련비</p> <p>차. 기타</p> <p>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p> <p>2) 소송료(등기료는 해당자산에 포함)</p> <p>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 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p> <p>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p> <p>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p> <p>6) 물품의 운송대(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p> <p>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p> <p>8)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 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 제경비</p> <p>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 통역비</p> <p>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 등 현상금이 수수료적일때에는 포함하고 측량수수료의 경우 자산취득 시 해당자산에 포함)</p> <p>11)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전자결제대행수수료 등</p> <p><b>12)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b></p> <p>13)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p> <p>2. 위원회 등 운영수당</p> <p>가. 위원회 참석수당</p> <p>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p> <p>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p> <p>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계상 가능</p> <p>나. 심사수당</p> <p>1)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투·융자 심사 등</p> <p>2) 정관 또는 규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p> <p>3)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다. 일·숙직수당</p> <p>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p> <p>2)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의거 일·숙직 담당부서에 기</p>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p>관단위로 계상</p> <p>라. 시험관리비</p> <p>1)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p> <p>마. 이사회 참석수당</p> <p>1)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비</p> <p>3. 임차료</p> <p>가.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p> <p>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p> <p>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청소비 등 실비지급)</p> <p>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p> <p>다.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p> <p>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임차료</p> <p>1)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p> <p><b>마.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 리스료</b></p>	
	02 공공운영비	<p>1. 공공요금 및 제세</p> <p>가. 우편물 발송대</p> <p>나.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p> <p>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p> <p>라.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p> <p>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p> <p>바. 무선 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p> <p>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p> <p>아. 기 타</p> <p>1)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p> <p>2) 보험(공제) 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p> <p>3)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p> <p>2. 연료비</p> <p>가. 냉·난방시설(부속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 포함) 및 연통구입비(부대경비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계상</p> <p>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p> <p>3. 차량선택비</p> <p>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p> <p>나. 선택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p>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03 행사운영비	<p>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p> <p>가.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p> <p>나.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p> <p>다.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p> <p>2. 기관이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p>	공통
	14 회의비	<p>4. 회의비</p> <p>가.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개최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 소요되는 비용(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 회의비 집행 불가)</p> <p>나. 노사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p> <p>※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 내에서 집행</p>	공통
	15 복리후생비	<p>1. 각 기관의 복리후생규정에 의거편성</p> <p>2.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비</p> <p>3.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시행경비(사내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p> <p>4.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구입 또는 제조경비</p> <p>5. 침구류 구입</p> <p>6.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p> <p>7. 급량비(원칙적으로 현금지급 금지)</p> <p>8.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자녀보육비 지원</p> <p>9. 사내복지기금 출연금</p>	공통
	16 광고선전비	<p>1.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p> <p>※ 대행사업,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p>	공통
	17 판매촉진비	<p>1. 인센티브 등 판매촉진을 위한 기타 제 비용</p> <p>※ 대행사업,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p>	공통
202 여비			공통
	01 국내여비	1. 기관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공통
	02 월액여비	1. 기관 규정에 따른 국내월액여비	공통
	03 국외업무여비	1. 기관 규정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공통
203 업무추진비			공통
	07 사업업무추진비	<p>1. 법인세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 내에서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p> <p>※ 대행사업 수행기관 : 법인세법 제25조 적용시 지자체 납부액을 매출액으로 간주</p>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2.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은 불가	
204 직무수행경비			공통
	01 직급보조비	1. 자체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직책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계상 가능	공통
	02 특정업무경비	1.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안전·보건관리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별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	공통
206 재료비			공통
	01 일반재료비	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성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3.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5. 수영장 등 사업용 상·하수도요금 6. 기타일반재료비 ※ 상품매출수의 관련 상품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233 상품매입비로 편성	공통
	02 약품비	1. 분뇨, 침출수, 음식물, 슬러지건조고화 등에 정화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약품구입비 및 운송비 2. 수영장 정수에 소요되는 약품비	공통
	11 의료약품비	1. 일반약품, 주사약품, 마취약, 마약, 소독약품, 약국재료 등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약품 구입비	의료원
	12 진료재료비	1. 방사선재료, 검사시약, 위생재료, 수술재료, 치과재료, 의료소모품, 수선성 의료장비, 혈액, 동위원소재료 등 환자의 진료를 위한 진료재료 구입비	의료원
	13 급식재료비	1. 건강검진환자 특식비, 급식재료비, 신생아 분유 등의 구입비 2. 청소련수련원 급식재료비 등의 구입비	의료원, 청소련수련원
207 연구개발비			공통
	01 연구용역비	1.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적 비용 2. 신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등	공통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비 ※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은 412 정보화시스템취득비로 편성	공통
	03 시험연구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험과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관련되는 시약 등 소모성 비용에 국한	
	04 개발인건비	1. 연구개발 투입인력 인건비	공통
213	교육훈련비	1. 각종 교육훈련관련 경비(교육(전문)여비, 교육위탁비, 외래 교육강사수당 등) 2. 직원의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용 및 자체 규정에 따른 대학원 등 교육과정에 따른 비용	공통
214	수선유지교체비		공통
	05 수선유지비	1. 건물, 기계장치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수선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 포함) 2. 하수 및 소각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운반비 포함) 3.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정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4.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비용(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도 포함)	공통
215	동력비	1.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운영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연료대 비용계상. 단 사무실용 전기료는 공공운영비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공통
217	관서업무비		공통
	01 정월가산업무비	1. 기관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직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공통
	02 부서업무비	1.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가.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	공통
218	평가급	1. 경영평가 결과 및 근무실적, 정부 권장정책의 도입에 따른 평가급 및 성과급 계상	공통
219	감가상각비	1.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당해 연도 분 감가상각비	공통
220	위탁관리비	1. 청소, 경비, 세탁 시설물관리, 제품운송 등 기관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용역수수료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233	상품매입비	1. 상품매출수익의 원천인 상품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공통
234	관리사업원가	1. 관리사업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공통
235	택지매출원가	1. 택지판매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공통
237	주택매출원가	1. 주택판매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공통
238	기타용지등매출원가	1. 기타용지등판매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공통
241	개발대행사업비	1.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가. 주민자치센터 건립 대행사업비 나. 공공시설물 건설 대행사업비 등	공통
251	재보증료	1. 재보증기관에 지급하는 재보증료	신보
252	보증료환급	1. 기수입보증료의 환급액	신보
259	기타신용보증비용		신보
	01 구상채권상각비	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액	신보
	02 대위변제준비비	1. 대위변제준비금 전입액	신보
	09 기타신용보증비용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신용보증비용	신보
261	의료분쟁비용	1. 의료사고보상비 및 치료비 등 의료분쟁 관련 비용	의료원
262	의료피복침구비	1. 환자에 제공된 피복침구의 소모금액, 환자 및 직원피복침구의 세탁에 따른 비누, 소독제 등의 비용(외주로 처리하는 위탁관리비로 계상. 직원피복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	의료원
263	선교비	1. 원목실 운영지원 등 원목활동을 위한 비용	의료원
264	의료사회사업비	1. 부인암 검진사업, 방역사업 및 의료계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료비, 출장비 등의 제반비용, 무의촌 진료비, 채헌혈비 등(단, 연구용 및 자선진료감액은 해당 의료수익에서 차감하여 계상)	의료원
265	환경관리비	1. 의료폐기물처리, 소독용역, 오물수거,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등을 위한 비용	의료원
269	기타의료비용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의료비용	의료원
301	일반보상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공통
	09 사회복지무요원보상금	1.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가.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2.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각 사업별, 기능별 예산의 각 세항에 계상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10 행사실비보상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li> <li>2.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li> <li>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li> <li>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li> </ol>	공통
	11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관이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li> <li>2. 기관이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 770 영업외비용 항에 한하여 편성</li> </ol>	공통
	12 장학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학사업 등을 위한 장학금</li> </ol>	공통
	13 기타보상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li> <li>2. 법령·조례(기관의 정관, 규정)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li> <li>3.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li> <li>4. 체육시설 운영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강사료</li> <li>5.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li> </ol>	공통
303	포상금		공통
	01 포상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및 포상품 구입비</li> <li>2. 예산절감,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li> </ol>	공통
304	연금부담금 등		공통
	01 연금부담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li> <li>2.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li> </ol>	공통
305	배상금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손해보상금, 국가배상금</li> <li>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li> <li>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li> </ol>	공통
306	출연금		공통
	0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는 경비</li> </ol>	공통
308	자치단체등이전		공통
	10 자치단체 보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연기관이 소관 기능을 공기관에 위임·위탁·대행하여 수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li> </ol>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11 민간위탁금	1.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는 경비 2. 출자출연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라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외부에게 위탁, 대행하는 경우, 이에 발생하는 부담경비	공통
309	전출금		공통
	03 유관기관 경상전출금	1. 출연기관이 소관 기능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유관기관에 대한 전출금	공통
311	차입금이자상환		공통
	03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1.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	공통
	04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용자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	공통
	06 기타차입금이자상환	1. 해외차입금(차관) 이자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 이자 상환	공통
	11 기업채취급제비	1. 채권발행 등에 따른 인쇄비, 수수료 등 관련비용 2. 차관 약정수수료 등	공통
	12 자치단체차입금이자상환	1. 자치단체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	공통
318	기부금	1. 불우복지시설 및 각종 행사개최 지원 목적의 기부금 등	공통
320	기타협의체등부담금	1. 기관이 가입한 협의체 등에 대한 부담금	공통
321	민간사업지원금	1. 기업 또는 민간에 대한 사업지원(민간창업지원 등 포함) 2. 통장사업 참가자 매칭 지원	출연
401	시설비및부대비		공통
	01 시설비	1. 용지조성사업비 가. 기본조사 설계비 1) 사업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문화유적조사비와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량사업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나. 실시설계비 1)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실시설계비 다. 토지보상(매입)비 및 지장물보상, 기타 보상비 등 라. 용지조성시설비(인건비, 재료비 등 포함) 마. 용지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2.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p>등)에 대한 보상비</p> <p>다. 상기사유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기타 부대경비</p> <p>라. 대체농지조성비부 등</p> <p>마. 개발제한구역 훼손담금 등</p> <p>3.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등의 설치 또는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기본조사 설계비</p> <p>1) 사업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조사비와 주요 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량공사비산정에 필요한 경비</p> <p>나. 실시설계비</p> <p>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p> <p>다. 공모설계비</p> <p>1)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 경비</p> <p>라. 조경, 조림 등에 대한 시설비(인건비, 재료비 포함)</p> <p>마. 구획정리사업 및 구경확대 등 현저한 가치증대를 수반하는 송·배수관 교체비</p> <p>4.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 대수선비</p> <p>※ 수익적 지출의 영업비용중 시설장비유지비 및 수선비와 구분되는 대규모의 수선경비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경비임.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만을 회복하거나 기능유지만을 위한 소규모의 수선경비는 이 목에 계상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의 수선교체비목(직접생산설비의 수선비)에 계상</p> <p>5. 문화재 발굴경비</p> <p>-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p> <p>6.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비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금액</p>	
	02 감리비	<p>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감리비</p> <p>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p>	공통
	03 시설부대비	<p>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장비임차료 포함)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p> <p>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 목에 계상</p>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p>3.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p> <p>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p> <p>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른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p> <p>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p> <p>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시)</p> <p>㉗ 도로굴착 시 민간건물 손상</p> <p>㉘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p> <p>㉙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p> <p>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 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p> <p>9. 공사감독관은 책임관리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p> <p>가.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 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p> <p>나.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 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p> <p>다.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p> <p>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p>	
	04 행사관련시설비	<p>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p> <p>-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p> <p>※ 기관이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 준수</p> <p>※ 대행사업, 징수 및 수용기관리사업,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p>	공통
405	자산취득비		공통
	01 자산취득비	<p>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비</p> <p>2. 입목취득비 및 취득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p>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3.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4. 사업용차량 및 기타의 육상·수상운반구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5. 공기구비품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가. 내용년수가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이상인 공구, 기구및 비품구입비 계상 나. 단, 내용년수 5년 미만이고,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익적 지출의 사무관리비에 계상 6. 전동차량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7.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철도차량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	
	02 도서구입비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공통
406	기타자본이전	1.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2.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공통
412	정보화시스템취득비	1.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공통
413	수탁자산취득비	1.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취득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금액	공통
421	대위변제및부대비		신보
	01 대위변제금	1.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중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금	신보
	02 재보전금반환	1. 대위변제된 채권의 회수시, 기 보전받은 재보증손실보전금의 반환	신보
	03 대지급금	1. 보증업체, 구상권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및 소송비용과 그 부대비용	신보
	04 공탁금	1.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에 따른 공탁금	신보
	09 기타대위변제등	1.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소요되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금액	신보
508	장기대여금	1. 장기적으로 무상 대여하는 대학생자녀학자금 등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	공통
509	매도가능증권등	1.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국채·지방채 2.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출자금	공통
510	보증금	1.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발생분 계상	공통
521	기타투자자산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투자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공통
522	기타비유동자산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601	차입금원금상환		공통
	03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1. 국내 예금은행에 대한 장기차입금 원금 상환	공통
	04 중앙정부차입금원금 상환	1.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용자금에 대한 차입금 원금 상환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공통
	07 차관상환	1. 해외차관 원금의 상환	공통
	08 기타해외채무상환	1.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공통
	11 자치단체차입금원금 상환	1. 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상환	공통
607	선수금상환	1. 선수금상환(해약에 한함)	공통
611	기타유동부채상환	1. 상가임대보증금 등 기타 열거되지 않은 유동부채 상환금	공통
612	기타비유동부채상환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비유동부채 상환금	공통
751	반환금		공통
	03 보조금반환금	1. 국비·지방비·기타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공통
	04 대행사업비반환금	1.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공통
	05 출연금반환금	1. 출연금 정산잔액 반환금	출연
	06 시설이용반환금	1. 시설이용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금	공통
752	배당금	1. 이익에 대한 배당금	출자
754	유형자산처분손실	1. 유형자산의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공통
755	자산손상차손	1. 재고자산 멸실로 인한 감손, 유형자산의 제각손을 계상	공통
756	외화환산손실	1. 환산 손실 중 당해연도 수익 해당액을 계상	공통
757	전기오류수정손실	1. 전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중대하지 않은 회계처리 오류를 당해 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공통
759	투자자산처분손실	1. 투자자산의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공통
771	기타영업외비용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기타영업외비용	공통
773	법인세등	1. 법인세 등 계상(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포함)	공통
774	기타자본적지출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	공통
775	기본재산적립	1. 잉여금 처분에 의한 기본재산 적립액	출연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801 예비비		[사업예산] 1. 사업예산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자본예산] 1. 자본예산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공통